

제 호

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

- 성 명 :
- 생년월일 :
- 성 별 :
- 주 소 :
- 보호자성명 :
- 반환등록증 : 제 호(년 월 일 교부)
- 반 환 사 유 :
- 반 환 기 일 :
- 반 환 장 소 :

별 칙 :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.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